

- 취수비율 “01 미만”을 “0.1 미만”으로 정정

하.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등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 추가 및 삭제(안 [별표 6])

-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(수질 및 수생태계)에 포함된 총인, 클로로필-a, 총유기탄소, 1,4다이옥세인, 포름알데히드, 헥사클로로벤젠 등 6종 추가

- 환경기준(수질 및 수생태계)에서 제외(‘15.12.)된 ‘화학적산소요구량’ 삭제

- 국내 정수 및 관망에서 적수를 유발하는 철, 망간(2종) 추가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, 정부세종청사 6동

- 전자우편 : gjgim@korea.kr

- 팩스 : 044) 201-7116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(전화 (044) 201 - 7116, 팩스 044)201-713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●환경부공고제2020-995호

「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2월 7일

환 경 부 장 관

「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」

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「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」 개정으로 유해물질에 오염되거나 이를 함유한 폐플라스틱 등이 유해폐기물로 추가되었으며, 국내법 상 바젤협약에 따른 유해폐기물은 수출입규제폐기물로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바젤협약 개정으로 새롭게 유해폐기물로 추가된 ‘오염된 폐플라스틱’ 등을 국내 수출입규제폐기물 목록에 반영함 (안 별지)

3. 의견제출

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e.go.kr> 법령·정책/입법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(반대시 사유 명시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

- 전자우편 : sanghyukan@korea.kr

- 팩스 : 044-201-7351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(전화 044-201-7347, 734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●환경부공고제2020-997호

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·전자제품(고시)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2월 7일

환 경 부 장 관

「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·전자제품」 제정고시안 행정예고

1. 제정이유

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·전자제품의 구체적인 범위를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개정(2020.11.24.)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유해물질 사용제한의 제외대상 전기·전자제품(안 제2조제1항)

군수품(전비품에 한함) 및 국가안보와 관련한 전기·전자제품을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품으로 규정함

나. 대형고정식 산업기기 및 대형고정설비의 인정기준(안 제2조제2항 및 별표)

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형고정식 산업기기 및 대형고정설비의 인정기준을 별표로 규정함

3. 의견제출

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·전자제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온라